

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[별표 5의2] <신설 2023. 12. 12.>

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(제11조의2 관련)

구 분		1급지 (부산항, 인천항, 울산항, 포항항, 광양항)	2급지 (여수항, 마산항, 군산항)	3급지 (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)
1. 필수 기준	가. 자본금	1.5억원 이상	1.5억원 이상	1억원 이상
	나. 노동력	검수사업·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검수사, 제3호에 따른 감정사 또는 제4호에 따른 검량사의 기준을 갖추는 것		
2. 기타 기준	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별표 6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(자본금 기준은 제외한다)을 함께 갖추는 것			

비고: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,
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"자본금"은 "출자금"으로 본다.